

#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9년 6월 9일
- 회부일자 : 1999년 6월 9일

## 3. 제안이유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시행되면서 같은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정지원의 대상·방법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4. 주요골자

-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적용범위는 대중교통지원사업에 한정함(안 제3조)
-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재원 및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안 제4조)
- 대중교통지원사업중 보조대상사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매년 7월말까지 선정하여 다음연도 1월부터 지원(안 제5조)
- 운행결손 보상방법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안 제9조)

## 5. 검토의견

충청북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모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의 고급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 대중교통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시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대중교통 지원사업 재원구분(안 제4조)

둘째, 보조대상 사업자의 선정방법과 용자대상 사업의 처리 및 보조 지원 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의 재원부담 명시(안 제5조)

셋째, 보조사업 및 용자사업의 결정(안 제7조)

넷째,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와 결과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지원(안 제8조)

다섯째, 지원금을 보조받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내용 명시(안 제12조)

여섯째, 대중교통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의 차입 등 기타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대중교통 문화발전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됨.

다만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선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 설치가 요구되며

용자대상 사업의 경우 시장·군수가 따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시·군간 용자기준이 상이하여 업무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안 제4조제1항중 도지사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와 동조제2항 대중교통지원 사업비의 재원에 있어 제3호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 및 융자회수금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도지사가 업체에 직접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나 안 제5조 제1항중 “다만 융자대상사업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자체재원 또는 금융기관 융자알선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와 안 제6조 제1항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융자부분에 있어 도지사가 융자업체선정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모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즉 동조 제1항중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시장·군수를 경위 도지사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바람직 할 것임.

안 제5조 제1항중 보조대상 사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매년 7월말까지 선정하여 다음년도 1월부터 지원한다와 안 제7조 제1항중 시장·군수가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대상사업의 선정에 있어 이원화가 될 경우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동조에서 인용한 제6조의 규정은 대중교통운송 사업자가 지원금 외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서류를 제출하는 내용인 만큼 동조 제1항중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가 아닌 대상사업자를 결정, 추천하여야 한다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단지 규칙만으로 할 경우 업체선정에 있어 투명성 확보와 객관적인 심사가 원칙적으로 봉쇄가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대한 방안으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위와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사료됨.

안 제10조 담보 및 용자금 상환방법 등에 있어,  
지원된 용자금의 담보·채권·채무관리,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바, 자치단체별로 규칙을 제정할 시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인 금융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되므로 용자금 취급에 있어 금융  
기관에 수탁관리 할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안 제12조중 도지사는 이미 보조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  
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안제10조  
중 지원된 용자금의 담보·채권, 채무관리, 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의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지원금에는  
보조금과 용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음.